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하고 23명 의원님들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·중·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아리수 음수대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설치

할 수 있도록 한 항목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(안 제 6조제2항)

이에 따라 관리에 대한 규정에서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(안 제9조3항)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